

도시계획상임기획단

용어설명

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·도시·군기본계획 또는 도시·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·도시·군기본계획 또는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·지도 및 조사·연구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둘 수 있는 기구이다.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. 1.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. 시도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.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.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. 시도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. 그 밖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

관련법규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관련용어

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

참고

-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-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
From:
<https://www.conschoo.co.kr/> - DB World

Permanent link:
<https://www.conschoo.co.kr/%EA%B1%B4%EC%84%A4%EC%9A%A9%EC%96%B4/%EB%8F%84%EC%8B%9C%EA%B3%84%ED%9A%8D%EC%83%81%EC%9E%84%EA%B8%B0%ED%9A%8D%EB%8B%A8>

Last update: 2016/04/07 03:58

